

조문별 제개정이유서

1. 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세부 사항 규정 (안 제15조, 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)

가. 개정 이유

- 국방부 자체 감사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주재무관이 시행하는 특별 휴가(전지휴양, 본국 위로휴가 등)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위함

나. 개정 내용

- 주재무관의 전지휴양, 본국 위로휴가 등의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‘그리고 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방정보본부장이 정한다’고 추가
 - * 해당 사항은 국방정보본부의 ‘재외공관 주재무관부 운영규정’을 통해 세부 규정하고 있음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관련 여행 및 일시귀국 시행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2. 무관활동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 규정 (안 제17조,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)

가. 개정 이유

- 국회 예결위 결산간 무관활동 포상금이 국방정보본부 훈령(재외공관 주재무관부 운영규정)에 반영하여 지급하여 법령상 근거 마련 요구

나. 개정 내용

- 무관활동 포상금 지급 근거를 반영하기 위해 ‘단, 무관활동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정보본부장이 정한다’라고 단서 조항 추가
 - * 무관활동 평가 관련 세부 사항은 국방정보본부의 ‘재외공관 주재무관부 운영규정’에 규정하고 있음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무관활동 포상금 지급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3. 주재무관의 양성 관련 규정 개정 (안 제19조, 주재무관의 양성 등)

가. 개정 이유

- 주재무관 양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어학교육 외 위탁교육을 통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도록 명시

나. 개정 내용

- 해병대에 대한 양성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‘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’으로 개정
 - * 주재무관 양성을 위한 해병대 책임 부여
- 우수 인력을 양성하도록 어학교육에 ‘위탁교육’을 추가
 - * 우수무관 양성에 어학뿐 아니라 전문교육(학위, 국외군사교육 등)이 필요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 효과

- 우수무관 양성을 위한 각 군 및 해병대 노력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